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521897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도기영, 안형윤

피 고 1.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변 론 종 결 2020. 6. 11.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6,962,039원 및 그 중 85,955,539원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9. 3. 5.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2019. 3. 5. 접수 제77528호로 마친 지분 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9. 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3927호로 마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기재 제3항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9. 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39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 및 대출금채무의 발생

1) 원고는 2013. 8. 22. 피고 A과 보증기한 2014. 8. 22., 보증금액 85,000,000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보험계약에서는 원고가 기한이익 상실 등 보증사고 발생으로 대출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은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변제할 것을 정하고 있다.

2) 피고 A은 D 주식회사에 원고가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D 주식회사는 2019. 6. 27. 원고에게 이자 연체를 이유로 한 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D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2019. 8. 22. 피고 A의 대출금채무 85,955,539원을 D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A은 2019. 1. 3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매매대금 90,400,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36,000,000원에 각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A과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170,000,000원은 피고 C의 기존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피고 C는 2019. 1. 31. 피고 A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재산분할계약

피고 A은 2019. 3. 5. 배우자였던 피고 B와 이혼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을 피고 B에게 분할하는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을다 제4호증의 1, 2, 을다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법적절차비용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85,955,539원,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006,500원, 2019. 8. 22.부터 현재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1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86,962,039원(= 대위변제금 85,955,539원 + 채권보전비용 1,006,5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5,955,53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10. 3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재산분할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있지는 않았으나, 이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재산분할계약 체결 이후 가까운 시일인 2019. 8.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인 피고 A의 무자력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은바,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138,722,799원(= 적극재산 합계 365,122,799원 - 이 사건 토지 가액 226,400,000원), 소극재산은 331,000,000원(= 소극재산 합계 501,000,000원 - 17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 당시에도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① 적극재산

종 류	가액
이 사건 토지	226,4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84,500,000원
춘천시 E 임야 863㎡ 중 53/863 지분	3,944,154원
춘천시 F 임야 453㎡	33,711,354원
경기 가평군 G 임야 333㎡ 중 67/333 지분	16,567,291원
합계	365,122,799원

② 소극재산

채권자	종 류	금액
H은행	대출금 채무	19,000,000원
D	대출금 채무	100,000,000원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112,000,000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피고 C	차용금채무	170,000,000원
합계		501,000,000

다. 피고 B와의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A과 피고 B는 2009. 5. 22. 혼인하였고, 2019. 1. 28. 협의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4. 20. 피고 A과 피고 B가 매매대금 182,5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으로, 피고 B는 위 매매대금 182,500,000원 중 적어도

143,000,000원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 B는 2009. 3. 2.부터 2010. 6. 14.까지 피고 A에게 합계 66,268,000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A 명의로 된 1/2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되, 35,000,000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위 금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피고 B가 피고 A과의 혼인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강원 평창군 I 토지 중 일부 지분(거래가액 4,263,000원), J 중 일부 지분(거래가액 377,000원)으로 가액의 합계는 4,640,000원이다(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의 적극재산이 107,961,849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그 중 위 4,64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피고 A과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의 대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였고, 피고 B가 피고 A의 혼인 생활 중에 새롭게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은 4,640,000원에 불과한데, 피고 B가 혼인생활 초기에 피고 A에게 지급한 금원 및 재산분할을 하면서 지급한 금원을 합하면 101,268,000원(= 66,268,000원 + 35,000,000원)에 이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것은 상당성을 초과한 과다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A과의 혼인생활 중 피고 A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아 생활을 하였으므로 피고 A이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중 1/2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상당성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A이 피고 B에게 매달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민법 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권으로 갈음한 것으로 대물변제에 준하여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3) 을다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 C는 피고 A와 친구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 C는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피고 C는 경기도 일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 C가 피고 A의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채무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인 2017. 7. 10.경에도 피고 C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하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만 원 정도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③ 피고 A은 2018. 5. 30. 피고 C에게 8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8. 7.경부터 계속하여 받을 돈이 있는데 늦어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자 연체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피고 A의 채권자들의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지거나 기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C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K에 있는

L건물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M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공동주택

지1층	27.03㎡
1층	51.72㎡
2층	209.89㎡
3층	209.89㎡
4층	209.89㎡
5층	209.89㎡
6층	158.42㎡
7층	158.42㎡
8층	158.42㎡
9층	158.42㎡
10층	158.42㎡
11층	158.42㎡
12층	158.42㎡
13층	147.52㎡
14층	140.9㎡

15층	104.37㎡
옥탑1층	20.16㎡
옥탑2층	20.1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4층 N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9.1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K
대 544.7㎡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대지권 비율 1. 544.70분의 18.42

2. 경기도 가평군 O 임야 701㎡ 중 701분의 370 지분
3. 경기도 가평군 P 임야 550㎡ 끝.